

2021년 06월 28일 제 정
2023년 04월 12일 1차개정

ESG 위원회규정

2023. 4. 12.



목 차

제1장 총칙	3
제1조 (목적)	3
제2조 (적용 범위)	3
제3조 (권한)	3
제2장 구성	3
제4조 (구성)	3
제5조 (위원장)	3
제3장 회의	4
제6조 (소집권자)	4
제7조 (소집절차)	4
제8조 (결의방법)	4
제9조 (검토사항)	4
제10조 (이사회와의 관계)	5
제11조 (관계인의 의견청취)	5
제12조 (의사록)	5
제4장 보칙	6
제13조 (사무국)	6
제14조 (규정의 개폐)	6
부칙	6

제1장 총칙

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SK디앤디 주식회사(이하 "회사"라 한다.)의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의한 ESG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고 한다.)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적용 범위)

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3조 (권한)

- ① 위원회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영전략 및 ESG 방향성에 대한 이사회 의사결정 지원 및 검토를 수행한다.
- ② ESG 관련 활동의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 환경경영 및 사회책임경영 정책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실행 계획 검토를 수행한다.
- ③ 사업분야의 리스크 및 기회를 식별·평가하기 위하여 적합한 리스크 관리 프레임워크를 실행·개선하고, 재무적·비재무적 리스크 및 기회에 대한 대응전략 검토를 수행한다.

제2장 구성

제4조 (구성)

- ④ 위원회 위원(이하 "위원"이라 한다.)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.
- ⑤ 위원의 선임 및 해임은 이사회 의사결정으로 한다.
- ⑥ 위원의 임기는 이사의 재임기간으로 한다. 다만, 이사회 의사결정으로 위원의 임기를 조정할 수 있다.
- ⑦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, 위원의 50%이상은 사외이사로 한다

제5조 (위원장)

-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하고, 위원장은 사외이사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 시 의장이 된다.
- ③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3장 회의

제6조 (소집권자)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 그러나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제5조 제3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7조 (소집절차)

- ①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여 그 2일전에 각 위원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.

제8조 (결의방법)

-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동영상 또는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제9조 (검토사항)

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 관점에서 검토하고 토의할 수 있다.

1. 연간 사업계획 및 수정

2. 중장기 계획 및 수정
3. 중요한 전략적 의사결정
 - (1) 자기자본 5% 이상의 타법인 출자
 - (2) 자산총액 5% 이상의 유형자산의 취득 및 처분 (단, 영업활동을 목적으로 한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은 제외)
 - (3) 중요한 영업 양수도
4. 회사 ESG 전략 방향
5. 전년도 ESG 추진 과제 이행사항 결과 및 당해년도 추진 계획
6. 기타 경영에 중요한 ESG 추진 계획, 활동 및 주요 위험
 - (1) 기후변화 대응, 탄소중립 이행 등 환경 리스크
 - (2) 인권, 공급망, 지역사회, 정보보호 등 사회 리스크
 - (3) 기타 ESG 관련 리스크
7. ESG 역량 개발 및 내재화를 위한 지원 필요 사항
8. 기타 ESG 및 전략 관련 주요 현안으로 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및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

제10조 (이사회와의 관계)

이사회는 위원회의 검토결과를 참고하되 위원회의 검토결과 및 의견에 구속되지 않는다.

제11조 (관계인의 의견청취)

-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임·직원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-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12조 (의사록)

-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제4장 보칙

제13조 (사무국)

- ① 위원회의 사무국은 경영전략 및 ESG업무 담당조직으로 한다.
- ② 사무국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 사무 전반을 처리한다.

제14조 (규정의 개폐)

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부칙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1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2023. 4. 12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결의한 2023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.